### 경운대학교 계절학기운영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19조 ③항에 의한 계절학기의 개설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개설시기 및 시수) ① 학칙 제19조 ③항에 의한 계절 학기는 방학 중에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고, 개설 10일 전에 수업시간표와 같이 공고한다.
  - ② 매 계절학기의 개설기간은 학칙 제47조에 의거 소요수업시간 이상으로 한다.
- **제3조(개설교과목)** ① 계절 학기에 개설할 교과목은 개설 예정일 2주전에 교학처에서 개설한다. <개정 2021.10.01.>
  - ② 계절학기의 수강은 개설교과목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생이 원하는 과목은 학부 (과)장의 승인이 있으면 수강 신청할 수 있다.
- 제4조(폐강) ①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은 교양과목 수강인원이 20명 미만, 전공과목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폐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예외로 할수 있다.
- 제5조(신청학점 및 성적) ① 계절 학기에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  - ②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당해학기 평점평균 및 성적사정에서는 제외한다.
- 제6조(수강대상자) ① 계절학기의 수강은 경운대학교 재학생이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총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학생 이외의 자도 수강할 수 있다.
  - ② 재학생으로 재수강을 희망하거나, 조기졸업 및 기타 사유로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.
- 제7조(수강신청 및 등록) ① 계절학기의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고, 납입고지서를 받아 등록하여야 하다.
  - ② 계절학기의 수강신청을 받은 지도교수는 수강신청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.
  - ③ 졸업예정 대상자 및 졸업유보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. 단,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제8조(강사료 및 업무보조비) ① 강사료는 계절학기 등록금액 내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.
  - ② 업무보조비는 계절학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별로 계절학기 등록금액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<2021.10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